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6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監事) 선임 규정 폐지(안 제4조)

나. 환경교육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신설 운영(안 제4조, 제8조)

다.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8조제2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 (2018. 5. 24. ~ 6. 14.)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붙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인을 포함하여 100인”을 “3명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명과 감사 2명”을 “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보건분과위

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로, “호선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 중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으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사무담당위원”을 “사무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사업계획수립”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긴급을 요하는”을 “긴급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후변화·에너지”를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로,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을 “환경관련”으로, “행사 추진”을 “행사 추진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를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관련”을 “등에 관한”으로, “정책개발”을 “정책 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이

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을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으로, “녹색구매”를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제8조제2항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제8조제3항 중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을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과위원회내”를 “소관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2의 제목 “(기타 협의회의 설치)”를 “(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을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을 “10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한다.

제15조 중 “서울시”를 “시”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에 따른”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제5조·제10조 규정에 의한”을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제22조 규정에 의거”를 “제22조에 따라”로, “자”를 “사람”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을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5조 중 “기타 이 조례시행”을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으로, “시장이 따로 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시민·기업이 함께 시정에 참여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
제2조(기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2. 삭 제 3. ~ 6. (생 략) 7.「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 제26조의2 제2항에 따른 자문 8. ~ 10. (생 략)	제2조(기능)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 3. ~ 6. (현행과 같음) 7.「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자문 8. ~ 10.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3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생 략) 2. 위촉위원 : 환경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② (생 략)	제3조(구성) ① ---------- 3명을 포함하여 100명 ----------- 사람이 --. 1. (현행과 같음) 2. ---------- 사람 ----------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자는 시민을 대표하는 자 1명과 기업을 대표하는 자 1명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① ----------------------------- 사람 ---------. ---------- 사람은 ---------- 사람 ---------- ------- 사람 ----------.
② 위원회는 부위원장 4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 5명---------- ----------.
③ 부위원장은 제8조의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되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순서에 의한 분과위원장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따른 ----------.
⑥ 감사는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재정집행에 대한 감사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삭 제>

제출한다.	
제5조(기획조정위원회) ①（생　략）	제5조(기획조정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위촉위원 중 분과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위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한다.	② ----------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사람 ---------- 사람 ---------- 사무담당 위원 ----------.
③ 기획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주요업무에 관한 협의·조정	1. ------ 사업계획 수립 ----------
2.（생　략）	2.（현행과 같음）
3.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	3. ---------- 긴급한 ---------
4.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구성·운영	4. 제8조의2에 따른 ----------
④（생　략）	④（현행과 같음）
제6조(고문)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중에서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고문) ---------- 위원 중----------.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제8조(분과위원회) ① ----------

여 위원회에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자원순환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를 둔다.	---------- ---------- ------ 환경교육분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기후·에너지분과위원회 : 기후변화·에너지 관련 정책자문 및 시민사업 추진, 환경교육 관련 자문 및 교육사업 지원, 환경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서울행동 21의 실천 및 자치구의제21 자문·지원, 환경관련 행사 추진	1. ---------- 기후변화·에너지·대기질 -------- ---------- 환경관련 --- ---------- ---------- ---------- ---------- -- 행사 추진 등
2. 생태분과위원회 :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자문, 도심열섬완화 관련 시민실천사업, 도시생태계, 물순환, 도시녹지, 도시농업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시민실천사업 발굴 등	2.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생물다양성 실천전략 등 도시 생태보전 관련 계획 수립·자문,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보호지역 관리, 도심열섬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관한 -- 정책 개발--
3. 자원순환분과위원회 : 자원절약 및 자원재활용 관련 자문 및 대안제시, 재이용·재사용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음식물 순환 관련 사업개발 및 시민참여 사업 발굴·추진, 녹색구매 관련	3. ---------- ---------- ------ 자원순환문화 확산 및 시민공감대 형성---------- ---------- ---------- 녹색제품 생산

정책자문 및 활성화사업 등	및 소비 ----------
<신 설>	4. 환경교육분과위원회 : 환경학습도시 추진, 환경교육 정책자문 및 실천사업 발굴,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변경 자문, 환경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
4.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대기질 개선관련 자문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 친환경 먹을거리 등 시민건강 관련 시민프로그램 개발, 실내공기질 및 유해물질, 악취·소음·방사능 등, 생활 관련 자문 및 홍보·교육 등	5. 환경보건분과위원회 :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먹을거리, 석면, 실내 공기질 등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시민의 건강문제에 대한 자문과 정책 개발 및 다양한 실천활동 등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한 30명 ----------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분과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내에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 ---------- 소관 분과위원회---------- ----------.
제8조의2 (기타 협의회의 설치) ① (생 략)	제8조의2(협의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협의회의 위원은 환	② ----------

경에 관하여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회 정원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기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람 ---------- ------- 그 밖에 ----------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 ① ~ ③ (생 략)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결격사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② (생 략)	제10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	④ ---------- 분과위원회 위원 -- 1 이상---

하다고 인정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12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회의개최 예정 10일전까지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안의 제출) ---------- 10일 전까지 사무담당 위원----------. ---------- 아니하다.
제13조(의안의 처리) ① (생 략)	제13조(의안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라 ----------.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 1명----.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 ---- 시 ----------.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서울시 예산편성 시기에 맞추어 위원회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제출) ---------- 시 ----------.
제23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제23조(재정지원) ① ----------

가 실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범위---------- ---------.
② 시장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조사·연구 및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21조에 따른 ---------- 범위 ----------.
제24조(수당) ① 시장은 제5조·제10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당) ① -----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 제22조에 따라 ---------- 사람---------- 범위----------.---------- 아니하다.
②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과 기업·시민단체의 관계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 제7조에 따른 사무담당 위원 ---------- 범위----------.
제25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규칙 ----------.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자문 기능의 위원회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감사 선임 규정을 폐지하고, 환경교육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환경교육분과위원회를 신설하며,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기능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이승한(2133-3529)